

# 「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26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### 2. 제안이유

- 방치 농업기계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실태조사 및 처리사업 등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환경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사업(안 제4조)
- 실태조사(안 제5조)
- 사무 위탁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7에서 군수는 방치되는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는 등 강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「동법 시행령」 제7조의2와 제8조에서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 처리 절차,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방치된 농업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농촌 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방치된 농업기계를 강제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처리 절차와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함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에서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구체화함.
- 안 제5조에서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명시함.
- 안 제6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농촌 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, 농업기계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※ 참고자료 : 2024년 평창군 농업기계 및 폐농업기계 보유현황<sup>1)</sup>

	농업기계 보유현황	폐농업기계 보유현황
계	109,913	1,250
<b>평창군</b>	<b>7,235</b>	<b>27</b>
춘천시	8,752	0
원주시	11,839	417
강릉시	8,634	4
동해시	2,389	0
태백시	958	2
속초시	1,277	0
삼척시	8,331	25
홍천군	12,686	5
횡성군	10,469	99
영월군	6,354	7
정선군	4,234	45
철원군	7,671	159
화천군	2,312	0
양구군	4,369	95
인제군	2,940	0
고성군	4,479	275
양양군	4,984	90

1) 출처 : 2024농업기계 보유현황(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) 재구성

## 붙임 관계 법령

### □ 농업기계화 촉진법

제8조의7(농업기계의 강제 처리) ①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농업기계가 제1항에 따라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농업기계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, 그 농업기계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각 또는 폐기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「공탁법」에 따라 잔액을 공탁(供託)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6.20.]

### 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

제7조의2(농업기계의 강제 처리)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2개월(농업기계가 분해·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)을 말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

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.

1.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: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
2.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: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

④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.

1.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
2. 농업기계의 분해,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·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
3.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⑤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1.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
2.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

**제8조(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)**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12.11.>

[전문개정 2009.9.3.]